



제437회 국회(임시회)
제4차 법제사법위원회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 헌법재판관의 자격요건 강화 〉

■ 한창민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12400호)

2026. 7.

법 제 사 법 위 원 회

전 문 위 원 이 세 진

목 차

I. 제안경위	1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검토의견	3
1. 헌법재판관의 자격요건 강화	3

I. 제안경위

(1) 제 안 자 : 한창민의원 등 12인

(2) 제 안 일 : 2025. 8. 27.

(3) 회 부 일 : 2025. 8. 28.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헌법 제112조는 “헌법재판소 재판관은 정당에 가입하거나 정치에 관여할 수 없다”라고 하여 헌법재판소 재판관의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하고 있고, 현행법 제4조는 “헌법재판소 재판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한다”라고 하여 헌법재판소 재판관의 직무상 독립을 보장하고 있음.

법률의 위헌 여부 등을 판단하는 헌법재판소는 최후의 헌법수호기관으로서 그 정치적 중립성 및 직무의 독립성이 강하게 요구된다고 볼 수 있고, 이는 권력 상호 간의 견제와 균형을 통한 국가권력의 통제를 의미하는 권력분립 원칙을 유지하기 위한 필수적 요소라고 할 수 있음.

이에 헌법재판소 재판관의 실질적인 중립성 및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법원조직법」 제43조제1항제4호와 같이 대통령비서실 소속 공무원으로서 퇴직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을 헌법재판소 재판관이 될

수 없도록 하고, 그 밖에 검찰총장,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 대통령이 임명하는 공무원으로서 재판관의 정치적 중립성 및 독립성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공무원으로서 퇴직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또한 헌법재판소 재판관이 될 수 없도록 개정하고자 함(안 제5조제2항제7호 신설).

Ⅲ. 검토의견

1. 헌법재판관의 자격요건 강화

가. 개정안의 내용

개정안은 헌법재판관 결격사유에 i) 국무총리, ii)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차관급 공무원, iii) 감사원장 및 감사위원, iv) 검찰총장, 각급 검찰청의 검사장 및 지청장, v) 대통령비서실 소속의 공무원, vi) 그 밖에 정무직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으로서 헌법재판소규칙으로 정하는 공무원으로서 퇴직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을 추가하는 내용임(안 제5조제2항제7호 신설).

현 행	개 정 안
제5조(재판관의 자격) ① (생 략)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재판관으로 임명할 수 없다. 1. ~ 6. (생 략) <u><신 설></u>	제5조(재판관의 자격) ① (현행과 같음) ② ----- -----. 1. ~ 6. (현행과 같음) 7. <u>다음 각 목의 공무원으로서 퇴직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u> <u>가. 국무총리</u> <u>나.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차관급 공무원</u> <u>다. 감사원장 및 감사위원</u> <u>라. 검찰총장, 각급 검찰청의 검사장(檢事長) 및 지청장</u>

현행	개정안
	<u>마. 대통령비서실 소속의 공무원</u> <u>바. 그 밖에 정무직공무원 또는 고</u> <u>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으</u> <u>로서 헌법재판소규칙으로 정하</u> <u>는 공무원</u>

나. 현행법상 헌법재판관 및 법관의 자격요건과 결격사유

헌법재판관은 법관의 자격을 가진 9인의 재판관으로 구성되고(헌법 제111조제2항)¹⁾, 정무직으로 하되, 그 대우와 보수는 대법관의 예에 따르는바(「헌법재판소법」 제15조)²⁾,

헌법재판관은 ①판사·검사·변호사, ②변호사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국가기관, 국영·공영 기업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또는 그 밖의 법인에서 법률에 관한 사무에 종사한 사람, ③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공인된 대학의 법률학 조교수 이상의 직에 15년 이상 있던 사람의 자격 요건을 가질 것이 요구되고 (「헌법재판소법」 제5조제1항)³⁾,

1) 「대한민국헌법」 제111조 ② 헌법재판소는 법관의 자격을 가진 9인의 재판관으로 구성하며, 재판관은 대통령이 임명한다.

2) 「헌법재판소법」 제15조(헌법재판소장 등의 대우) 헌법재판소장의 대우와 보수는 대법원장의 예에 따르며, 재판관은 정무직(政務職)으로 하고 그 대우와 보수는 대법관의 예에 따른다.

3) 「헌법재판소법」 제5조(재판관의 자격) ① 재판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직(職)에 15년 이상 있던 40세 이상인 사람 중에서 임명한다. 다만, 다음 각 호 중 둘 이상의 직에 있던 사람의 재직기간은 합산한다.

1. 판사, 검사, 변호사

2. 변호사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국가기관, 국영·공영 기업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

i) 다른 법령에 따라 공무원으로 임용하지 못하는 사람, ii)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사람, iii) 탄핵에 의하여 파면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iv) 「정당법」 제22조에 따른 정당의 당원 또는 당원의 신분을 상실한 날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 v) 「공직선거법」 제2조에 따른 선거에 후보자(예비후보자를 포함한다)로 등록한 날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 vi) 「공직선거법」 제2조에 따른 대통령선거에서 후보자의 당선을 위하여 자문이나 고문의 역할을 한 날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은 결격사유에 해당되어 헌법재판관이 될 수 없음(「헌법재판소법」 제5조제2항)⁴⁾.

한편, 현행법상 법관은 ①판사·검사·변호사, ②변호사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그 밖의 법인에서 법률에 관한 사무에 종사한 사람, ③변호사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공인된 대학의 법률학 조교수 이상으로 5년 이상 재직한 사람의 자격 요건을 가질 것이 요구되고(「법원

에 따른 공공기관 또는 그 밖의 법인에서 법률에 관한 사무에 종사한 사람

3. 변호사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공인된 대학의 법률학 조교수 이상의 직에 있던 사람

4) 「헌법재판소법」 제5조(재판관의 자격)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재판관으로 임명할 수 없다.

1. 다른 법령에 따라 공무원으로 임용하지 못하는 사람

2.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사람

3. 탄핵에 의하여 파면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정당법」 제22조에 따른 정당의 당원 또는 당원의 신분을 상실한 날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

5. 「공직선거법」 제2조에 따른 선거에 후보자(예비후보자를 포함한다)로 등록한 날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

6. 「공직선거법」 제2조에 따른 대통령선거에서 후보자의 당선을 위하여 자문이나 고문의 역할을 한 날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

③ 제2항제6호에 따른 자문이나 고문의 역할을 한 사람의 구체적인 범위는 헌법재판소규칙으로 정한다.

조직법」 제42조)5),

i) 다른 법령에 따라 공무원으로 임용하지 못하는 사람, ii)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사람, iii) 탄핵으로 파면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iv) 대통령비서실 소속의 공무원으로서 퇴직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v) 「정당법」 제22조에 따른 정당의 당원 또는 당원의 신분을 상실한 날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⁶⁾, vi) 「공직선거법」 제2조에 따른 선거에 후보자(예비후보자를 포함한다)로 등록한 날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 vii) 「공직선거법」 제2조에 따른 대통령선거에서 후보자의 당선을 위하여 자문이나 고문의 역할을 한 날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은 결격사유에 해당되어 법관이 될 수 없음(「법원조직법」 제43조)⁷⁾.

5) 「법원조직법」 제42조(임용자격) ① 대법원장과 대법관은 20년 이상 다음 각 호의 직(職)에 있던 45세 이상의 사람 중에서 임용한다.

1. 판사·검사·변호사

2. 변호사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그 밖의 법인에서 법률에 관한 사무에 종사한 사람

3. 변호사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공인된 대학의 법률학 조교수 이상으로 재직한 사람

② 판사는 5년 이상 제1항 각 호의 직에 있던 사람 중에서 임용한다. 이 경우 20년 이상 제1항 각 호의 직에 있던 사람 중에서 특정 재판사무만을 담당하는 판사를 임용할 수 있다.

③ 제1항 각 호에 규정된 둘 이상의 직에 재직한 사람에 대해서는 그 연수를 합산한다.

④ 판사의 임용에는 성별, 연령, 법조경력, 종류 및 기간, 전문분야 등 국민의 다양한 기대와 요청에 부응하기 위한 사항을 적극 반영하여야 한다.

⑤ 법원행정처는 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판사 임용 과정과 결과 및 임용제도 개선 상황을 매년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6) 다만, 헌법재판소는 2024년 7월 18일 제43조 제1항 제5호 중 ‘당원의 신분을 상실한 날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에 관한 부분에 대하여 위헌 결정을 하였음.

7) 「법원조직법」 제43조(결격사유)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법관으로 임용할 수 없다.

1. 다른 법령에 따라 공무원으로 임용하지 못하는 사람

2.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사람

3. 탄핵으로 파면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대통령비서실 소속의 공무원으로서 퇴직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정당법」 제22조에 따른 정당의 당원 또는 당원의 신분을 상실한 날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

6. 「공직선거법」 제2조에 따른 선거에 후보자(예비후보자를 포함한다)로 등록한 날부터 5년이 경과되지

< 헌법재판관 및 법관의 결격사유 >

헌법재판관 결격사유(헌법재판소법)	법관 결격사유(법원조직법)
제5조(재판관의 자격)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재판관으로 임명할 수 없다. 1. 다른 법령에 따라 공무원으로 임용하지 못하는 사람 2.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사람 3. 탄핵에 의하여 파면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정당법」 제22조에 따른 정당의 당원 또는 당원의 신분을 상실한 날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 5. 「공직선거법」 제2조에 따른 선거에 후보자(예비후보자를 포함한다)로 등록한 날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 6. 「공직선거법」 제2조에 따른 대통령선거에서 후보자의 당선을 위하여 자문이나 고문의 역할을 한 날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	제43조(결격사유)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법관으로 임용할 수 없다. 1. 다른 법령에 따라 공무원으로 임용하지 못하는 사람 2.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사람 3. 탄핵으로 파면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대통령비서실 소속의 공무원으로서 퇴직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정당법」 제22조에 따른 정당의 당원 또는 당원의 신분을 상실한 날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 [단순위헌, 2021헌마460, 2024.7.18. 법원조직법(2020. 3. 24. 법률 제17125호로 개정된 것) 제43조 제1항 제5호 중 '당원의 신분을 상실한 날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에 관한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 6. 「공직선거법」 제2조에 따른 선거에 후보자(예비후보자를 포함한다)로 등록한 날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 7. 「공직선거법」 제2조에 따른 대통령선거에서 후보자의 당선을 위하여 자문이나 고문의 역할을 한 날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

아니한 사람

7. 「공직선거법」 제2조에 따른 대통령선거에서 후보자의 당선을 위하여 자문이나 고문의 역할을 한 날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

② 제1항제7호에 따른 자문이나 고문의 역할을 한 사람의 구체적인 범위는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다. 검토의견

개정안은 헌법재판관 결격사유에 i) 국무총리, ii)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차관급 공무원, iii) 감사원장 및 감사위원, iv) 검찰총장, 각급 검찰청의 검사장 및 지청장, v) 대통령비서실 소속의 공무원, vi) 그 밖에 정무직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으로서 헌법재판소규칙으로 정하는 공무원으로서 퇴직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을 추가하는 내용으로,

헌법재판관의 정치적 중립성 및 직무상 독립성을 강화하고, 헌법재판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제고함에 개정 취지가 있는 것으로 보임.

다만, 개정안에 대하여는 헌법재판의 성격, 헌법재판관의 정치적 중립성 및 직무상 독립성 제고의 필요성 측면과 「법원조직법」상 법관 결격사유와의 형평성, 공무담임권 제한 측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개정 여부를 결정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즉, 헌법재판은 헌법을 심사기준으로 하여 국가권력행사의 합헌성 여부를 사법적으로 통제하는 국가작용으로 그 법적 성격과 관련하여 헌법재판관이 구체적인 헌법적 분쟁을 해결한다는 측면에서 사법적 기능을 행사하나, 국회와 행정부 사이의 권한쟁의에 관한 심판, 위헌결정을 통한 위헌적 법률의 효력 제거, 위헌정당 해산, 고위공직자 파면 등을 통한 정치적 파급

효과, 헌법재판의 심사기준인 헌법규범의 개방성 등에 비추어 정치적 성격을 가진 사법 기능을 수행한다고 평가됨. 따라서 헌법재판의 성격에 비추어 헌법재판관의 정치적 중립성과 직무상 독립성 보장은 필수적으로 요구됨⁸⁾.

특히, 헌법재판관은 임명 과정에 일부 정치적 관여를 받고(「대한민국 헌법」 제111조)⁹⁾, 그 결정에 상급심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개정안과 같이 결격사유를 강화하는 것은 헌법재판관의 정치적 중립성 및 헌법재판에 대한 국민의 신뢰도 제고 측면에서 타당한 측면이 있는 것으로 보임.

다만, 헌법재판관에 대한 결격사유는 「법원조직법」 제43조에 따른 법관의 결격사유와 유사하게 규정되어 있는바,

개정안에서 법관의 결격사유와 동일하게 대통령비서실 소속의 공무원으로서 퇴직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을 추가하는 것 외에 국무총리,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차관급 공무원, 검찰총장, 각급 검찰청의 검사장(檢事長) 및 지청장으로 경력이 있었던 자 등 공직 경력이 있었던 자를 결격사유에 추가하는 것이, 법관의 자격을 요건으로 하

8) 헌법재판소 헌법재판연구원, 『주석 헌법재판소법』, 10-16면, 142-143면 참조.

9) 「대한민국 헌법」 제111조① 헌법재판소는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

1. 법원의 제청에 의한 법률의 위헌여부 심판
2. 탄핵의 심판
3. 정당의 해산 심판
4. 국가기관 상호간,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간 및 지방자치단체 상호간의 권한쟁의에 관한 심판
5. 법률이 정하는 헌법소원에 관한 심판
- ② 헌법재판소는 법관의 자격을 가진 9인의 재판관으로 구성하며, 재판관은 대통령이 임명한다.
- ③ 제2항의 재판관중 3인은 국회에서 선출하는 자를, 3인은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자를 임명한다.
- ④ 헌법재판소의 장은 국회의 동의를 얻어 재판관 중에서 대통령이 임명한다.

는 헌법재판관의 결격사유만 강화하거나 그 사유를 추가하는 것이 되어 형평성 측면에서 부적절한 것은 아닌지 등을 고려하여 개정 여부를 결정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문 의 처

02)6788-5058
